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박물관·미술관 사업 범위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명시〉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66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박물관·미술관의 사업 범위에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 명시(안 제4조제1항제6호의3)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16.
3. 회 부 일 : 2026.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III. 검토의견

1. 박물관·미술관의 사업 범위에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 명시 (안 제4조제1항제6호의3)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업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의2.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생략)	제4조(사업) ①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u>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4조제1항1)은 박물관·미술관의 사업범위를 박물관·미술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자료인 박물관·미술관자료²⁾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비록, 박물관·미술관의 사업범위로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최근 강조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 모두가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³⁾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외계층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⁴⁾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여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 지방박물관들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국립현대미술관도 정서적 취약계층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친화 교육공간 조성 및 미술관 초청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예술 다운 프로젝트’를 2026년부터 신규로 실시하고 있음.⁵⁾

이와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4조의 사업 범위 규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문제 해결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4) 2026년 예산 3억 4,000만원

5) “다운”이란 순우리말로 좋은일이 찾아온다는 뜻임. 예술다운 사업의 2026년 예산 29억 5,000만원임.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통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